

의안번호	2202397
의 퇴 인	강경숙 의원
회 답 일	2024.08.13.
추 계 번호	24C24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교원)	(제2항)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교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을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규칙의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규정내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²⁾ 등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³⁾

1) 교육부 고시 제2023-12호

2)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 법안의 제안이유 등⁴⁾을 고려할 때 교원의 학생 교육·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를 위한 추가·신규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추가될 수 있음
 - 그러나 교육청별·학교별로 교육여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법 시행에 따라 추가될 사업내용과 예산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 어려운 경우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등
-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397호) 제안이유
(...)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이하 생략)